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

제 정 : 2012. 11. 02.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13. 10. 28.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15. 11. 10.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17. 04. 26.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20. 05. 08.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21. 03. 18. 직권 수정
 개 정 : 2022. 06. 10. 직권 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이하“산학협력교원”이라 한다) 공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총원 분야 결정) ① 대학(대학원, 독립학부)장은 관련 학부(과) 및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산학협력교원 총원을 요청한다.

② 총원대상 학부(과)의 총원 분야 및 인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총장은 학부(과)에서 총원 요청을 한 경우 이외에도 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원대상 학부(과)의 총원 분야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결정된 총원 분야 및 인원에 대하여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산학협력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12년 이상이고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경력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산업체 경력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8.><개정 2015.11.10.>

②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개정 2020.05.08.>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경 력 내 용	경력인정률 (%)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중복하여 완화하지 아니한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창업경험으로 인정) 1회 이상인 자 : 3년 완화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3. 박사학위소지자 : 3년 완화(단,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개정 2013.10.28.>

제3조의2(특정대학 편중 제한) ① 산학협력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산학협력교원 채용인원의 3분의 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산학협력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우리 대학교에 채용된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0.28.>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2013년 2월부터 신규 채용된 산학협력교원부터 적용한다.<신설 2013.10.28.>

제4조(공고)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서류 및 실적물 접수) 산학협력교원 공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산업체 경력 사항(소정양식) 1부
3. 산학협력 활동 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목록(소정양식) 1부
5.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각 1부
6. 전공관련 경력 및 재직증명서(채용지원서상 증빙 자료) 각 1부
7. 최종 학위 논문 1부
8.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각 1부
9.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각 1부

제6조(심사절차) ① 산학협력교원 공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심사
2.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3.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신설 2017.04.26.>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면접심사대상자 추천)<신설 2017.04.26.>
5. 면접심사<개정 2017.04.26.>

6.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후보자 추천)<개정 2017.04.26.>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위원회,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위원회,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04.26.>
-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LINC 3.0사업단장, 해당 소속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4.26.,2022.06.10.>
- ③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교내위원 3명, 교외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대학원, 독립학부)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위촉) 한다. 다만, 심사위원 추천 시 교외위원은 2배수를 추천한다.<개정 2017.04.26.>
- ④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위원 추천시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장,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지원자의 출신교 재직교수(우리 대학교 재직교수는 예외)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⑤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교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7.04.26.>
- ⑥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혁신부총장, 인사관리처장을 포함하여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4.26.,2021.03.18.>
- ⑦ 총장은 공개채용 진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각 단계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위촉)하여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7.04.26.>

- 제8조(심사위원의 책무) ① 각 심사위원장은 채용분야별로 마련된 심사지침 및 심사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야 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자별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작성한 채용지원서류의 내용과 실제 실적물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04.26.>
- ④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위원장은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를 주관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일정 및 심사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04.26.>
- ⑤ 자격심사위원,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위원,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표 6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6.>

- 제9조(자격심사) ① 자격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제3조에 따라 심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자격심사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합격 판정을 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10조(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① 전공적합성심사는 소속 학부(과)의 해당 전공교원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②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은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 ③ 심사위원 1/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 ④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심사위원이 판정한 경우라도 실적심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실적심사는 모집분야와 관련된 학력, 전공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실적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⑥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결과의 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3배수를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3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로 한다.<개정 2017.04.26.>
- ⑦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대상자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대상자로 선발한다.<신설 2017.04.26.>

제11조(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04.26.>

제12조(점수 배점)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와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7.04.26.>

구분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합계
점수 배점	적합, 부적합 50점	50점	100점

<개정 2017.04.26.>

제13조(심사결과 이의 신청) 산학협력교원 공채과정 중 자격심사,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면접심사 전까지 구체적 사실(의견서 등)을 명기하여 해당 대학(대학원, 독립학부)장 명의로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6.>

제14조(면접심사 대상자 추천) 교원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교원 공개채용 심사단계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를 면접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심사대상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04.26.>

제15조(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은 면접심사 결과를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6.>

② <삭제><개정 2017.04.26.>

제16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완료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제반사항과 누적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임용 후보자 1명을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학부(과)장(필요한 경우 대학장도 참석요구

가능)을 출석시켜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학, 학부(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04.26.>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학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외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의 유보를 건의할 수 있다.
 - 1.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 2. 추천된 지원자가 임용되었을 때 학부(과)의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04.26.>
 - 3. 기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임용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 자를 신규 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개정 2017.04.26.>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임용을 유보하거나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04.26.>
 - 1. 추천된 자의 결격사유가 추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 3. 기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임용 취소) 신규 임용된 경우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04.26.>

제19조(기밀 보안) 산학협력교원 채용 단계별 심사위원 및 산학협력교원 채용 업무와 관계된 자는 채용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6.>

제20조(지원자의 제출서류 처리) ① 지원자는 심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7.04.26.>

- ②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지원자에게 채용관련 서류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2012.1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10.)

제1조(한시적기구 설치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10.28.> <개정 2015.11.10.>

자격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심사		비고
산업체 경력	- 제3조의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년수)	충족	미충족	
최종 학위	- 제3조의 지원자격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충족	미충족	
심사결과		합격	불합격	
종합 심사 의견 (종합 심사의견을 반드시 기술할 것)				

※ 자격심사는 제3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산업체 경력과 최종 학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함.

※ 지원자격

- ① 산학협력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12년 이상이고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경력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산업체 경력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②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중복하여 완화하지 아니한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창업경험으로 인정) 1회 이상인 자 : 3년 완화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3. 박사학위소지자 : 3년 완화(단,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

[별표 2]

전공적합성심사 기준표

전공영역 적합성	적합성 여부	
	적합	부적합
종합 심사 의견(반드시 종합 심사의견을 기술할 것)		

※ 심사방법

- 전공적합성 심사시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종사 경력, 학력, 연구실적물을 통한 주 연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소속 학과의 해당 전공교원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창업, 취업지원 등)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사

[별표 3]

실적심사 기준표

구 분	심 사 내 용		배 점
학력 (10점)	학위 유무	박사 학위 소지자 : 10점	10점
		석사 학위 소지자 : 5점	
전공 분야 적합성 (10점)	산업체 경력의 전공관련 분야 적합성 정도		10점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의 우수성 (10점)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 년이내의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10점
종합평정 (20점)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의 지명도, 산업체에서의 직위 등		10점
	산학협력전임교원으로서 의 발전 가능성		10점
총 점			50점
종합심사 의견	(종합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술할 것)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1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함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기준표

심 사 내 용		배점
산학협력을 통한교육 및 취업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관련 전공지식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강의 능력 - 학생 취업 및 창업지도 - 취업특강, 창업특강, 자기계발특강 능력 	20점
산학협력(연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실무능력과 전문성 - 산학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실효성 - 외부연구비 수탁 가능성 및 연구능력 - 협력기업체 관리 및 홍보 활동 능력 	20점
인성 및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품, 친화성, 의사표현능력 능력, 학과에 대한 기여의지 	10점
총 점		50점
종합심사 의견 (심사 후 종합적인 의견을 반드시 기재할 것)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1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함

[별표 5]<개정 2017.04.26.>

면 접 심 사 조 서				
전공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학부(과) 심사결과	구 분	취득점	단계별 순위	
	전공적합성 및 실적심사			
	산학협력교육능력심사			
	총 합			
면접 심사요소 및 판정				
구 분	심사요소			심사의견
심사 내용	인품 및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산학협력 활동 역량			우수, 보통, 미흡
	실무교육 및 취업 활동 역량			우수, 보통, 미흡
	조직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의지 및 잠재력			우수, 보통, 미흡
종합평가	탁월	우수	미흡	부적격
종합의견	종합 의견 기술			
면접위원 : (인)				

※ 종합평가 시 판단 기준

심사의견	판 단 기 준
탁월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가 모두 '우수' 로 평가될 경우
우수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2개 이상일 경우
미흡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1개 이상일 경우
부적격	전체 심사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으로 평가될 경우

[별표 6]<개정 2017.04.26.>

서 약 서

본인은 영남대학교 0000학년도 0학기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위원으로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 및 심사지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함은 물론 전형관리상의 제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교원채용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